

# 세금포인트제 시행

국세청 납세홍보과 자료제공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항공회사, 백화점 등이 고객관리 및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이용 규모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고에서는 세금포인트제 시행 배경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 1. 시행 배경

국세청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금포인트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대표적 불만사항인 '세금을 성실하게 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고 특히,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부터 법인세를 많이 납부한 고액납세 법인에게 고액납세기념탑을 수여하는 것과 함께 고액납세 개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금포인트제의 시행으로 개인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이 개인별로 누적적으로 집계되어 관리되므로 국민 누구나 본인이 평생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해 왔는지를 알 수 있고 향후 사회 기여도를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평생 소득세 납부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세금포인트제 개요

### 1) 세금포인트 적용대상

모든 국민에게 적용 가능하고 평생에 걸쳐 누적관리의 의미가 있는 소득세를 대상으로 세금

포인트가 부여되는데 종합, 근로,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새천년의 시작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 2)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

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을 부여하며 조세범칙으로 처벌받은 불성실납세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전부 삭감한다.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차감시킨다.

## 3) 세금포인트 적립실적 통보·확인

3월말까지 누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납세자 3만 7천명에게 납부세액 및 포인트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향후 누계세액이 1억원 이상 납세자에게 연 1회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4월 1일부터 인터넷(HTS : Home Tax Service)을 통하여 자신의 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 4) 세금포인트 이용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자납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 연간 납세담보면제 한도액 : 적립된 포인트 × 10만원 × 50% (연간 2억원 한도)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납세액 1억원)

이상이 되면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 신청을 할 때 세무관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된다.

## 5) 세금포인트 이용 가능 인원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및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천점 이상자는 약 3만 3천명으로 3년간 1억원 이상 납부자는 약 3만 7천명이나, 고지납부세액에는 10만원당 0.3점이 부여되어 인원이 적어지게 된다. 한편 납세담보 면제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백점 이상자는 약 68만 3천명으로 추정된다. [ko]

## 독 자 쥬 렘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